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청년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무조정실장)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됨에 따라, 청년참여 위원회의 범위를 정하고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규정(안 제20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와 30% 이상 청년을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와 위촉 비율을 규정함

나. 청년시설의 설치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1조의3)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청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기준을 규정함

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안 제21조의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함

라. 청년지원센터의 기준 규정(안 제21조의5)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및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안 제21조의6)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를 규정하고, 전담 운영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현행 제22조 삭제)

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안 제21조의7)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 중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1. 정책·제도 개선이 아닌 개별 사건이나 처분 등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관계, 국방, 국가안보, 방위산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
3. 행정 내부 관련(인사, 평가, 입찰 계약 등) 위원회
4. 그 밖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제20조제2항(중전의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다): 2분의 1”을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1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분의 1”을 “1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밖에”를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 이상”을 각각 “3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를 “10분의 3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로, “및 청년 위촉 비율은”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제4호가목에”를 “제1항에 따라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2항제4호가목”으로, “변경하면”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0분의 3 이상

5. 그 밖에 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위원회: 10분의 1 이상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으로 한다.

제4장에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년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사업을 실

시한 경험이 있고 청년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2.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주요 청년 관련 국제행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시설·운영 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센터 업무 총괄·지원·평가
2. 지역센터 공통사업 개발 및 사업 간 조정·관리
3. 지역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4.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역량강화 사업 개발·운영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정보 수집·제공
6.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수행
7.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지원·청년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중앙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운영·실적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국무총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기준 충족 여부
2. 청년지원센터로서 사업수행 계획

⑥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6(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 및 안내

2.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3. 청년정책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법 제24조의5 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산 분야의 전문인력을 2명 이상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보안에 필요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4.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 기준을 갖출 것

③ 국무총리는 전담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전담 운영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여 국무총리가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전담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

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 전담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7(청년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

②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 기반 및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정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시설·인력·조직 등에 관한 기준(제21조의5제1항 관련)

I. 시설 기준

1.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3. 그 밖에 청년교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 것

II. 운영 기준

1. 인력 기준

- 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이 운영하는 소정의 ‘청년지원센터 종사자 양성·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 나. 위 ‘가’목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장은 중앙청년지원센터장이 운영하는 ‘청년지원센터 양성·보수 교육과정’을 향후 이수할 것을 전제로 종사자 채용을 할 수 있다.

2. 조직 기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에는 센터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 밖에 청년지원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두어야 한다.

[별표 2]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시설·인력·조직 등에 관한 기준(제21조의5제3항 관련)

I. 시설 기준

1.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춘 1개 이상의 사무실
2. 원활한 상담과 개인비밀 보호를 위해 분리된 공간 또는 방음 장치를 갖춘 1개 이상의 상담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4. 그 밖에 중앙청년지원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갖추는 것

II. 운영기준

1. 인력 기준

중앙청년지원센터는 시행령 제21조의5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 및 관리업무 수행직원을 포함한 상근종사자가 10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조직 기준

중앙청년지원센터에는 센터 사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 밖에 지역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어야 한다.

III. 실적기준

1. 청년지원, 청년발전 및 지역 청년정책 관련 협업체계 구축에 관해 3년 이상의 사업 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별표 3]

청년지원센터 지정 취소 세부 기준(제21조의5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처분권자는 2차 이상 위반을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으로 보아 그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의4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2호	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다. 법 제24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4조의4 제4항제3호	경고. 다만, 처분권자가 정하는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지정 취소

비고: 처분권자는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신 설>	제20조(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의 범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 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 원회로서, 그 중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한 다. 다만, 시 · 도지사가 구성하 는 위원회 중 청년을 의무적으 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 니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책 조정위원회의 심의 · 조정을 거 쳐 시 · 도지사가 정한다. 1. 정책 · 제도 개선이 아닌 개 별 사건이나 처분 등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2. 외교관계, 국방, 국가안보, 방 위산업 등과 관련된 위원회 3. 행정 내부 관련(인사, 평가, 입찰 계약 등) 위원회 4. 그 밖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
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
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조정위원회: 2분의 1 이상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지
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 한
다): 2분의 1 이상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
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
진특별위원회: 2분의 1 이상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을 거쳐 국무총리가 정하
는 위원회: 10분의 1 이상
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국무총

위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

② ----- 따른 위원
회별 청년 위촉 비율 및 -----
----- 10분의 3이상을 청년
으로 위촉하여야 -----
--- 등은 -----.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10분의 3 이
상

2. -----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0분의
3 -----

3. -----

----- 10분의 3 ---

4.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
원회로 -----

가. -----

----- 3 이상--

리가 정하는 비율

나. 시·도지사가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지방청년정책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
하는 위원회: 10분의 1 이
상의 범위에서 지방청년정
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
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신 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4호가목
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을 정하거나 변
경하면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
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
시해야 한다.

제4장

<신 설>

나. -----

----- 3 이상

5. 그 밖에 1~4호에 해당하지 아
니한 위원회: 10분의 1 이상

③ ----- 제1항에 따라 청
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정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2항
제4호가목 --- 변경하는 경우

-----.

제4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1조의3(청년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청년시
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년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청년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4(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청년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

2.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주요 청년 관련 국제행사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신 설>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년단체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의5(청년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시설·운영 등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②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센터 업무 총괄·지원·평가
2. 지역센터 공통사업 개발 및 사업 간 조정·관리
3. 지역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4. 지역센터 종사자 교육·역량 강화 사업 개발·운영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 정보 수집·제공

6.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개발·수행

7.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지원·청년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중앙센터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운영·실적 등을 갖추어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국무총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를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별표1 또는 별표2에 따른 청년지원센터 기준 충족 여부

2. 청년지원센터로서 사업수행 계획

⑥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⑦ 법 제24조의4제4항에 따른

<신 설>

지정 취소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6(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 및 안내
2.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3. 청년정책에 관한 통계 생성 및 관리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 및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법 제24조의5제3항에 따른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년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산 분야의 전문인

력을 2명 이상 포함한 전담조
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
보안에 필요한 사무실과 기자
재를 확보할 것

4.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
는 데 필요한 업무 절차 및 청
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 기
준을 갖출 것

③ 국무총리는 전담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의 전담 운영기관의 지
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
무를 현저히 부실하게 수행하
여 국무총리가 전담 운영기관
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전담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
다.

<신 설>

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 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 전담 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21조의7(청년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이하 “청년친화도시”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형성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권익 증진 방안

②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 기반 및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년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정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청년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청년친화도시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청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삭 제>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하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청년정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